

■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[별표] <개정 2024. 10. 8.>

국방대학교의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정원표

(제12조제1항관련)

총 계	61
군인인 교수 및 부교수	28
군무원인 교수 및 부교수	7
군인·군무원 이외의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교수 및 부교수	26